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음 악 산 업 진 흥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청소년보호법」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결되어 모든 객실에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해짐에 따라,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청소년실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(제9조관련)

1.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.
2. <삭제>
3.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,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292